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10. 3. 11(목)

산 업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0. 1. 25
- 나. 발 의 자 : 박희경·김성숙 의원 외 9인
- 다. 회부일자 : 2010. 1. 25
- 라. 상정일자 : 2010. 3. 3(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)
 - 제안설명 : 박희경 의원
 - 검토보고 : 산업전문위원 김복기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수도물 수질기준은 점차 강화 되어 엄격한 생산관리를 통하여 수도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음에도 수도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및 음용률은 크게 상승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
- 우리 시 미추홀 참물의 수질향상과 수도물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사회단체 및 시민 등이 함께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·시행시 사업비 및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와 수질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인천광역시 음용률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41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- 시민들이 참여하여 수질향상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비와 위생조치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
-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미 서울시 수도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.
- 또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“수질검사에 필요한 경비”는 수도법 제33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는 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.
- 다만, 향후 동 조례안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급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(다가구 주택 포함)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○ 김을태 의원

- 위의 조례가 없었을때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?
- 미추홀 참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시민이 있는지?
- 미추홀 참물 홍보시 페트병을 보급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시 페트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.

○ 한도섭 의원

- 수질검사 비용은 얼마를 지원을 해주는지와 선정기준은?
- 시범사업이 완료되고 사업효과가 좋아 다수시민이 요구할 때 방안
-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독 및 다세대 연립주택의 지원방안은?

○ 강창규 의원

- 수질검사비용의 산출근거는?
- 대상아파트 선정요건 기준과 각 가정에서 정수를 사용할 때 확인 방법은?
- 대상선정을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노후관을 교체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아파트 위주로 시범사업 할 때 모순점은?

< 답 변 >

○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복

-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미추홀참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음.(매체홍보 59%, 캠페인 및 이벤트 19.7%, 시민참여 행사 10.7%, 생산과정 견학 10.2%, 기타 0.4%).
- 미추홀참물과 관련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없습니다.
- 각종 행사시 원활한 보급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4,000만원입니다.
- 아파트 당 500만원입니다.
- 시범사업은 아파트 전세대가 먹는 샘물이 아닌 미추홀 참물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주민서명을 받은 아파트로 선정할 것이며, 선정될 경우 직접 음용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인 현지 출장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.
- 4,000만원입니다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한도섭, 박희경, 강창규, 김을태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 : 4명)

7. 기타 특이사항

- “ 없음 ”

- 붙임 : 1.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1조의2(음용률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 지원) ① 시장은 수질향상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시민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 및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와 수질검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41조의2(음용물 향상과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 지원) ① 시장은 수질향상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음용물 향상을 위하여 시민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 및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와 수질검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